

업 무 보 고 사 항

□ 제 3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

-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- '95. 7. 14
 - . 집회일시 : '95. 7. 20 (목) 오전 10시
 - . 집회이유

[상반기 군.읍면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청취 화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 등 개정 및 제정조례안 5건 심의처리
---	---
 - . 집회요구자 : 조영길 의원 외 4명
- 제 35회 화순군의회 집회공고 - '95. 7. 14 (화순군의회 공고 1995 - 4호)
< 공고내용 >
 - . 일 시 : '95. 7. 20 (목) 오전 10시
 - . 장 소 : 화순군의회 의사당

□ 각종 안건 발의 및 제출사항

- 제 3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발의
 - . 발의자 : 양동복 의원 외 3명
 - . 회 기 : '95. 7. 20 ~ 7. 26 (7일간)
-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발의
 - . 발의자 : 조영길 의원 외 3명
 - . 출석요구 내용 : 별첨
-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(안)
 - . 제안이유
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따른 민간자본유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으로 지역개발과 군민 생활의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함.

. 주요골자

- 목 적 :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한 민간유치
- 구 성 : 위원장(부군수) 1인을 포함 15명 이내
- 기 능 :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 시행자 지정 등
- 회 의 :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 필요시 소집

○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. 제안이유

화순군도곡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부로 부터 도곡온천개발사업소를 한시적으로 화순온천개발사업소의 분소로 설치운영하고 존속시한 '96. 12. 31로 지시 됨.

도곡온천및화순온천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전문 개정

. 주요골자 (개정내용)

- 위 치 : 사업소를 화순군 북면 옥리에 두고 도곡분소를 도곡면 천암리 사업소는 북면온천지구, 도곡분소는 도곡온천지구를 관할한다.
- 분 소 장 : 분소에 분소장을 두며, 지방토목주사 또는 지방건축주사보함. 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관장, 소속공무원 감독

○ 화순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

. 제안이유

부군수의 직급이 서기관으로 변경되어 지방서기관 1명 정원 감축

도곡온천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, 화순온천개발사업소에 도곡분소를 설치코자 함.

. 주요골자

- 군 본청란에 지방서기관 1명을 감한다.
- 부칙 ②항 (한시정원) "도곡온천개발사업소"를 "화순온천개발사업소 도곡분소"로 변경

○ 화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. 제안이유

'95. 7. 1 부터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을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 조항이 폐지

되어 종전 화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,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. 주요골자

가. 의정활동비 추가로 제명 변경

나. 종전 회의시 지급하던 "일비"를 "회의수당"으로 함. (안 제 3조)

다. 의원의 의정자료수집,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월정액으로 "의정활동비" 월 35만원 이내에서 지급토록 함. (안 제 2조의 1항 및 제 6조)

라. 여비지급에 있어 종전 회의참석시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과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시에만 지급토록 함. (안 제 4조)

○ 화순군의회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의장단의 임기에 준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특별위원회의 남설과 상설화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기준, 활동기간,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등의 규정을 명시하기 위하여 등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. 주요골자

가. 특별위원회 설치기준, 활동기간,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등 규정을 명시함. (안 제7조)

나.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기에 관한 특례 규정 (부칙 제2항)

○ '95년도 상반기 군.읍면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요구 결의(안)

— '95. 7. 14

. 발 의 자 — 김성인 의원 외 2명

. 제안이유

-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의 '9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소상히 파악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,

-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, 시행 착오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의 '95년도 업무집행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건을 제안함.

□ 제 32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

- 회기결정의 건
-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
-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
- '95년도 상반기 군.읍면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요구 결의안

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용

요구일시	출석요구대상	출석요구사유
7. 21(금) 10:00	군수, 기획실장, 문화공보실장, 내무과장, 사회진흥과장, 재무과장, 지적과장, 사회과장, 가정복지과장	○ 95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
7. 22(토) 10:00	환경보호과장, 산업과장, 산림과장, 지역경제과장	○ 95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
7. 24(월) 10:00	도시과장, 건설과장, 민방위과장, 농촌지도소장, 보건소장, 온천개발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	○ 95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
7. 25(화) 10:00	화순읍장, 한천, 춘양, 청풍, 이양, 능주, 도곡, 도암면장	○ 95년도 상반기 읍·면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
7. 26(수) 10:00	이서, 북, 동북, 남, 동면장, 기획실장, 내무과장,	○ 95년도 상반기 읍·면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 ○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과 질의에 대한 답변 청취